

# 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학회

## (Society for e-Business Studies)

시행: 1996. 2. 23.

개정: 2005. 3. 23.

개정: 2022. 3. 31.

## 定 款

### 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학회라 한다 (이하 본회라 한다.)

제2조 (목적) 본회는 전자거래를 위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관련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학술적 연구와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)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- 1) 전자거래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, 토론회의 개최
- 2) 전자거래에 대한 학술적, 기술적 조사 연구 및 발간 사업
- 3) 전자거래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대한 연구
- 4)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한 연구
- 5)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
- 6) 위 각 호의 업무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# 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의 종류와 자격)

- 1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다만 명예 회원, 단체 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.
- 2)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## 1. 정회원

- 가)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써 전자거래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.
- 나)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써 정보화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.
- 다) 전자거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써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.

## 2. 학생회원

대학에서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.

## 3. 단체회원

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(학교, 도서관, 연구기관)

## 4. 명예회원

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.

## 5. 종신회원

정회원으로써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.
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다만 학생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.

제7조 (회원의 탈퇴)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 탈퇴의 수속 절차는 본 회의 규정으로 한다.

제8조 (회원의 제명)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.

- 1)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- 2)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- 3) 소정의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
- 4)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

## 제3장 임 원

### 제9조 (임원)

- 1)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- 1. 회장 1 인, 수석부회장 1인, 부회장 약간 명 포함하여 50인 이하의 이사
  - 2. 감사 2 인
- 2)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.

#### 제10조(임원의 임기)

- 1)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)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피선하고 피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#### 제11조 (임원의 선출)

- 1) 회장과 감사 및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) 총회는 이사(부회장 포함)의 지명을 신임 회장에게 일임하고, 차기 총회에 보고 하도록 한다.

#### 제12조(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직무)

- 1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.
- 2)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의무를 대행하며, 총회의 결을 거쳐 다음 임기의 회장직을 승계한다.
- 3) 단, 산업계 등의 명망 있는 인사가 회장으로 추대될 경우 수석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연임한 후, 총회의결을 거쳐 다음 임기의 회장직을 승계한다.

#### 제13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- 1) 본 회의 재무상황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)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정한 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일
- 3)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4)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일
- 5)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
제14조(상임이사의 지명) 회장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. 상임 이사회 의 직무는 본 회 규정으로 한다.

### 제4장 총회

#### 제15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) 정관의 변경에 대한 사항

- 2) 회장과 수석부회장,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3)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4) 기타 중요한 사항

#### 제16조 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
- 1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대회 중에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3.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
  4.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- 2) 총회소집은 회장이 의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14일전까지 회원에게 당 학회지, 논문지,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제17조 (총회의 구성과 의결 정족수)

- 1)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2) 총회의 의결 사항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.
- 3) 회원은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#### 제18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
- 1)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있는 후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- 2)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재적이사 과반수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요구가 있는 후 2주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5장 이사회

제19조 (이사회 구성과 의결사항)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1)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- 2) 사업 계획, 운영에 관한 사항
- 3) 예산 결산서 구성에 관한 사항

- 4)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
- 5) 제 규정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
- 6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7)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
#### 제20조 (이사회의 소집)

- 1)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) 회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2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3.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) 이사회는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1조(이사회의 소집의 특례)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2조 (이사회의 의결 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 (서면의결의 금지) 이사회는 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.

제24조 (회의록)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, 의장, 출석이사 전원과 감사의 기명 날인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.

### 제6장 (재무 및 회계)

제25조 (재무) 본 회의 회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기부금
3. 기타 수입금

제26조 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27조 (세입, 세출, 예산) 본 회의 세입, 세출, 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매 회계년도 1개월 이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제시한다.

## 제7장 보 칙

제28조 (해산)

- 1)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2) 본 법인이 해산한 때에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.

제29조 (정관의 변경)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0조 (규정의 제정)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1조 (광고 및 그 방법)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광고는 이를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
## 부 칙

1. 본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개정: 2022년 3월 31일

**사단법인 한국전자거래학회 회장**